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시외버스(직행형)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이하“법”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의 운송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6조, 제7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된 운임요금을 회사나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은 자(위탁)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받은 금액을 말한다.
3. “차내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한 물품중 과도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물건을 제외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4. “수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화물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화물”이란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과 신문을 말한다.
6. “휴대수화물”이란 여객의 휴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송하인이란 운송약관에 의거 회사에 수하물 운송을 위탁하고 화물표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수하인이란 화물표에 수하물 인수자료 지정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화물표란 송하인 또는 수하물주와 회사 간에 사업 노선상의 수하물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송하인을 위하여 작성된 수하물 증표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을 예약·예매 등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신고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종사원의 안내) 여객은 승·하차 질서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객 및 수화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게시) 회사 및 각 영업소에는 여객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승차권과 운임

제9조(승차권의 발행) 회사는 운임을 받은 때에는 승차권을 승차권원부,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발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과 좌석지정제 운영시 좌석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또한 승객소지용 승차권에는 발행자의 전화번호 및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질,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환불 및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2조(무임운송) 법 제8조제4항 및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동반하는 만6세미만의 어린이 1인(동반자1인당)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발행후 및 지정차 출발 후 이틀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임의 환불 및 환급) 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한 운임 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이때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지정차 출발 후라도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다른 차량이용 가능시 승차할 수 있다.

1.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승차권중 통용기간 2일전까지의 승차권에 대하여는 그 운임액의 전액 환불한다.
2.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승차권중 좌석 및 운행시간이 지정된

승차권에 대하여는 출발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까지 승차권에 대하여는 그 운임액의 5%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3.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승차권중 출발전일 또는 당일 승차권에 대하여는 그 운임액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한다.(또한 “좌석 및 운행시간이 지정된 승차권중 출발 1시간전 경과후부터 출발시각전 까지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4. 통용기간 이후 승차권에 대하여는 그 운임액의 20%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5. 통용기간중의 정기 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 환급의 청구가 있는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기 여객운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②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구간의 운임 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이상일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100%이상일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불 및 환급금 계산시 50원미만은 절사한다.

⑤ 신용카드로 결제를 통하여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 카드의 매출취소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승차권에 대하여는 기존 운영된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장 여 객

제15조(여객의 목적지 변경)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목적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 책임진다.

제16조(운송의 책임)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 종기는 승차권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점을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17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등 안전운전에 저해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3. 종사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거나 오르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행과 과격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과 불안감 등을 하는 행위.
9. 기타 종사원이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시하는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8조(승차권 점검 및 부가운임 징수 등) ① 여객은 종사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을 제시 또는 제출토록 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승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수도 있음.

1. 승차권을 소지 및 제시하지 않고 탑승한 경우.
2.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 탑승한 경우.

3. 기타 승차권, 할인증 등을 위조 부정사용 하였을 경우.

제19조(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및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종사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간호원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 또는 정신병 환자.
5. 각종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 4 장 차내 휴대품

제20조(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물품은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21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서 용적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 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제22조(휴대품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물품의 확인) 회사는 안전운행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부식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 및 차량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여객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제외)
3.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물품
4. 차내의 통로 및 출입구 등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여객에게 위험을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5 장 수 화 물

제25조(화물표의 교부) 회사는 여객이 수화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증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운임) 수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

제27조(허용중량 및 용적) ① 수화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부피는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수화물의 허용중량은 수화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③ 6세미만의 어린아이에게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내용물의 점검) 회사는 수화물 수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객이 지정한 제3자의 입회하에 수화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9조(운송거절 수화물) 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수화물 운송을 거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화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화물

제30조(운송상의 변경) 수화물은 여객과 동일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초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 6 장 책임 및 배상

제31조(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목적지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화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32조(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수거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3조(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여객에게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이탈 하여 초래한 피해
3. 휴대 수화물의 차내 분실(회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여객의 손해
5. 여객의 부주의(포장, 관리 등)로 수화물의 파손, 변질 등이 발생한 경우
6. 여객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

제1조(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신고를 한 후에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